

★ ◎

사장 방침 제993호

문서번호	예산자금팀-5526
보존기간	10년
결재일자	2015.11.23
공개여부	공개
일상감사	대상

팀 원	예산자금팀장	전략기획처장	기획경영본부장	사장
				11/23
권준희	조한보	황상하	김우진	변창흠
협조				

일상	No. 1008	감사	의견
감사	2015/11/17	민경배	의견있음

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(안)

서울특별시 SH공사

(기획경영본부 예산자금팀)

의안번호 : 제 호

『2015년도 제1회』

추가경정 예산 (안)

2015. 11.

서울특별시 SH공사

차 례

이사회 부의(안) 1

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(안) 2

수 입 예 산 4

지 출 예 산 5

예 산 총 칙(변경) 6

부 의 안

제 306 회 이 사 회	
2015년 11월 24일	의안번호 제 호
의 제	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(안)
구 분	의 결 사 항

제 안 자 : 전략기획처장 황 상 하

주 문 :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.

제안사유

- 지방공기업법 제65조(예산), 에스에이치(SH)공사 정관 제24조 제2호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7조 제2호에 의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(안) 확정을 위한 이사회 의결사항

의결사항 :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(안) 확정

[단위 : 백만원]

예산 총액	자체사업	대행사업
4,497,383(100%)	4,116,228(91.5%)	381,155(8.5%)

※ 2015년 기정예산(4,554,689백만원) 대비 57,306백만원(1.3%) 감액

참고사항

1. 제안근거

- ① 지방공기업법 제65조(예산)
- ② 에스에이치(SH)공사정관 제24조 제2호(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)
- ③ 이사회운영규정 제7조 제2호(예산 및 결산)

2.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(안) 내용 및 세부내역 : “별 첨”

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(안)

I. 추가경정예산(안) 편성개요

□ 편성 기본방향

- 신규 주택건설사업승인된 사업지구의 필요예산을 적시에 반영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
- 균형예산 달성을 목표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차입액 반영 및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택지 및 주택개발사업 비 조정 예산 편성

□ 추경예산(안) 변동내역 총괄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추경예산	기정예산	증감(△)	증감율
				%
계	4,497,383	4,554,689	△ 57,306	△ 1.3
자 체 사 업	4,116,228	4,178,131	△ 61,903	△ 1.5
대 행 사 업	381,155	376,558	4,597	1.2

□ 주요 추경사유

- 수입예산
 - 신규 대항계약체결에 따른 대항사업전입금 반영(46억)
 - 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사업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차입액 예산 반영(△ 619억)
 - 사업계획 변경 및 준공정산 완료
 - 신규 사업승인지구 차입

○ 지출예산

〈증액 : 1,785억원〉

- 신규사업의 예산 편성(139억)
 - 신정 도시개발사업 환지보상금(70억)
 - 고덕강일지구 등 9개지구 설계도급비 등 건축사업비(69억)
- 계약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 편성(21억)
- 신규 대행계약체결에 따른 대행사업비 반영(46억)
-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통보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등 반영(34억)
- 2015년 기업홍보 종합 추진계획에 따른 광고선전비 증액(25억)
- 다가구 주택 호당 매입가격 상승분 계상(645억)
- 영업비용 감축 분으로 부채상환액 증액편성(875억)

〈감액 : 2,358억원〉

- 사업계획 미확정 등에 따른 보상비 지급시기 이연(△588억)
- 택지개발사업 기간연장으로 준공전 납부예정인 부담금 등 지급시기 이연(△1,439억)
- 사업계획 변경으로 공사착공 지연 등에 따른 차액 삭감(△297억)
- 인건비 상승분 예비비에서 차감(△34억)

II. 예산과목별 추가경정예산(안) 변동내역

□ 수입예산

[단위:백만원]

예산과목	추경예산 (A)	기정예산 (B)	증·감(△) (A-B)	주요내용
계	4,497,383	4,554,689	△57,306	-
영업수입	2,784,138	2,779,541	4,597	-
판매수입	2,290,695	2,290,695	0	-
임대사업수입	116,232	116,232	0	-
기타영업수입	0	0	0	-
대행사업수익	377,211	372,614	4,597	· 신방화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(1,708) · 세운상가 재생사업 보상업무(1,889) ·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앵커부지 매입 및 시설확보(1,000)
영업외수입	34,832	34,832	0	-
자산처분	53,658	53,658		-
부채수입	1,251,989	1,313,892	△61,903	-
주택도시기금	471,153	533,056	△61,903	· 분양 및 임대주택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차입액 반영
금융차입금	320,000	320,000	0	-
임대보증금	460,836	460,836	0	-
자본금	208,728	208,728	0	-
자본잉여금	134,038	134,038	0	-
이월금	30,000	30,000	0	-

□ 지출예산

[단위:백만원]

예산과목	추경예산 (A)	기정예산 (B)	증·감(△) (A-B)	주요내용
계	4,497,383	4,554,689	△57,306	-
영업비용	3,071,006	3,276,951	△205,945	-
택지개발사업비	1,224,233	1,419,989	△195,756	· 신정 도시개발사업 신규반영(7,053) · 사업계획 미확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시기 이연(△58,813) ·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비 및 부담금 지급 시기 이연(△143,996)
주택건설사업비	799,757	820,488	△20,731	· 고척 장기전세 외 8개 신규사업(6,926) · 계약변경 등에 따른 추가사업비 반영(2,102) · 공사 착공 시기 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지급시기 이연(△29,759)
임대사업비	415,311	415,311	0	-
대행사업비	381,155	376,558	4,597	· 신방화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(1,708) · 세운상가 재생사업 보상업무(1,889) ·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앵커부지 매입 및 시설확보 (1,000)
인건비·경비	250,550	244,605	5,945	·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 기준 통보에 따른 인건비 등 반영(3,401) · 2015년 기업홍보 종합 추진계획에 따른 광고선전비 증액(2,544)
영업외비용	39,457	39,457	0	-
자산취득	661,350	596,850	64,500	· 다가구 주택 매입가격 상승분 반영
부채상환	619,305	531,765	87,540	· 영업비용 감추경 등에 따라 상환액 증추경
법인세	101,466	101,466	0	-
예비비	4,799	8,200	△3,401	· 인건비 편성분 감액

[예산총칙(변경안)]

제1조 2015년도 에스에이치공사 [이하 “공사” 라 한다]의 추정손익계산서, 추정 대차 대조표는 아래와 같다.

추 정 손 익 계 산 서

[단위 : 천원]

차 변				대 변			
비 용		순 이 익		수 익		순 손 실	
추경	기정	추경	기정	추경	기정	추경	기정
3,244,938,323	3,245,159,649	106,585,211	106,363,885	3,351,523,534	3,351,523,534	-	-

추 정 재 무 상 태 표

[단위 : 천원]

차 변				대 변			
자 산		순 손 실		부 채		자 본	
추경	기정	추경	기정	추경	기정	추경	기정
24,921,167,202	25,008,485,637	-	-	18,496,267,315	18,583,807,076	6,424,899,887	6,424,678,561

제2조 공사의 기능별 예산내역은 별첨과 같다.

제3조 [차입한도액]

2015년도 차입한도액은 주택도시기금 471,153백만원, 공사채는 320,000백만원으로 한다.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주택도시기금 차입액은 주택건설공사 진척도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융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초과 차입할 수 있다.

제3조의 1(일시차입금) 자금의 일시적 차입이 필요한 때에는 사장은 별도의 이사회 의결 없이 일시 차입할 수 있고 그 한도잔액은 400,000백만원 이내로 하며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. 일시차입금은 제3조의 차입 한도액과 실적계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한도잔액의 상향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4조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5조 사장은 추정손익계산서의 변동 및 출자금의 증감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추정 대차대조표의 관, 항, 목 금액을 수정할 수 있다.

제6조 [예산전용 금지과목] 다음에 계기하는 과목의 경비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다.

- ① 인건비, 차입금원금상환, 차입금이자상환, 기타유동부채상환, 기타비유동부채 상환은 목간 전용할 수 없다.
- ② 업무추진비(타 비목으로부터의 전용금지)

제7조 [수입금마련 지출 및 위·수탁사업]

- ① 사장은 예산에 선정된 사업계획 목표의 초과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을 위한 지출을 할 수 있다.
- ② 사업연도 중에 위·수탁사업을 시행할 경우 위·수탁 사업비를 당해 연도 예산에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한다.

제8조 사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규모를 변경시킬 수 있다.

- 가. 시비 또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
- 나. 배당금 지급 또는 출자금이 증감되는 경우
- 다.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대행사업을 수행하는 경우
- 라. 정부 결정에 의한 공공요금, 환율 및 금리의 변동이 있을 경우

제9조 사장은 다음 비목에 대하여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초과계리할 수 있다.

- 가. 퇴직급여
- 나. 제상각비
- 다. 공공요금 및 제세, 등기소송비 등
- 라. 국민주택기금이자 및 기타 지급이자
- 마. 임대보증금 및 장기차입금 상환
- 바. 주택(상가)관리부문의 입주자 사용경비 및 공가관리비
- 사. 잡 손 실
- 아. 배 당 금
- 자. 건설사업비의 시 납부 토지대금
- 차. 임대주택자산 매입대금
- 카. 배 상 금

제10조 사장은 보수, 여비, 학자금 지급 등 그 집행규정의 제정 또는 정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제정 정비한 후 예산을 집행한다.

제11조 ① 예산을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. 단,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비와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- ② 사장은 사업물량 변경 등 여건변화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경우의 직접 공사비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실소요액으로 조정 할 수 있다.

제12조 사장은 예산을 집행한 후 예산집행실적보고서를 재무보고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은 2015년도 서울특별시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.